

◆ 대한소화기 기능성질환·운동학회 해외학회 참가비 보조금 지원 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소화기 기능성질환·운동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회원 및 학회 임원의 해외학회 참가여비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보조금의 명칭은 해외학회 참가비 보조금이라 한다.

제3조 (지급대상자의 자격)

본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학회 회원 혹은 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낸 자로 한다.

1. 국제학회의 연자,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 단,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와 공동저자 1인
2. 국제학회의 좌장 혹은 토의자로 선정된 자
3. 국제학회의 조직위원으로 선정된 자
4. 기타 학회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학회 임원회의에서 판단한 자

제4조 (해외학회 지원 선정)

학회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해외학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임원회의 토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5조 (구비서류)

1. 해외학회 참가비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학회 지정 양식)
2. 해외학회 참가비 신청자 이력서 1부(학회 지정 양식)
3. 학회초청장 사본 1부
4. 초록 및 연제와 연자가 명시된 학회 순서도 (본인에게 발송된 이메일 사본도 가능함) 각 1부
5. 국제학회 조직위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 1부

제6조 (지급심사 및 대상자 선정)

지급심사는 현 회장, 현 회장이 추천한 5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 학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제7조 (지급방법 및 지원금액)

보조금의 지급 범위는 개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학회등록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급방법 및 지원 금액은 학회 임원회에서 조정, 결의한다.

(단, 잡비, CD구입, 책 구입 등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8조 (결과처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해외학회 참석 후 15일안에 해당 액수 지출내역서 및 영수증을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보칙)

기타 보조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본 규정은 학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내실 곳 :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사무국 e-mail : motility@kams.or.kr

문의처 : Tel. 02-538-0634/ Fax. 02-538-0672